

충청북도의 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부녀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이하 "특기자"라 한다)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당 2명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군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증 장관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7.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8. 기타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소방서와 군(소방서 미관할구역)의 전체 의소대원 수에 따른 장학생수는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장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4: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다.

③ 읍·면지역 의소대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도예산에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1. 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4조(해임사유)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②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도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도지사의 현금으로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장 학 생 정 원

소방서(군)별 전체 의소대원 수	장학생 수
60 — 110 명	10 명
111 — 130 명	11 명
131 — 150 명	12 명
151 — 170 명	13 명
171 — 190 명	14 명
191 — 210 명	15 명
211 — 230 명	16 명
231 — 250 명	17 명
251 — 270 명	18 명
271 — 290 명	19 명
291 — 310 명	20 명
311 — 330 명	21 명
331 — 350 명	22 명
351 — 370 명	23 명
371 — 390 명	24 명
400 명 이상	25 명

근 거 법 규

□ 소방법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4419호)

제 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

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

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